2025.9

인천광역시 2025년 재정사업 및 보조사업 성과평가

최 종 보 고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나라살림연구소
Fiscal Reform Institute

ABSTRACT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경제 성장률 저하와 지방세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열악해지는 것과 반대로 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저하함.

○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와 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도출된 결과를 환류하여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평가과정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담당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함.

2) 주요 평가 대상

□ 주요재정사업 평가 대상

○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한 총 209개 사업에 대해 평가함. 주요 평가 자료는 사업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 사업설명서, 성과보고서 및 만족도·모니터링 등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함.

□ 지방보조사업 평가 대상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 328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함. 주요 평가 자료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함.

3) 평가 일정

□ 주요 일정별 주요 업무

[표 1]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일정 및 흐름

주요재정사업	일정	지방보조사업
평가 대상 확정 및 자료 수집	3월 24일~4월 30일	평가 대상 확정 및 자료 수집
운용평가 지표 구성 1. 투자사업 및 행사사업 특성 분석 2. 사업 특성 반영 지표 설계	3월 24일 ~ 3월 28일	운용평가 지표 구성 1. 운용평가 대상 사업 특성 분석 2. 대상 사업 통계목별 특성 분석 3. 지방보조금 특성 반영 지표 구성
평가단 구성 및 서면 평가 1. 분야별 전문 평가단 구성 2. 평가단 평가 지표 숙지 회의 3. 전문가별 서면 평가 4. 서면 평가 결과 숙의	4월 7일 ~ 5월 25일	평가단 구성 및 서면 평가 1. 분야별 전문 평가단 구성 2. 평가단 평가 지표 숙지 회의 3. 전문가별 서면 평가 4. 서면 평가 결과 숙의
부서 면접 조사 1. 미흡 이하 사업 담당자 면담 2. 평가 초안 확정	5월 28일 ~ 6월 10일	부서 면접 조사 3. 미흡 이하 사업 담당자 면담 4. 평가 초안 확정
평가 의견 부서 회람 1. 부서별 평가 초안 회람 2. 부서 의견 반영 최종본 확정	6월 9일 ~ 7월 25일	평가 의견 부서 회람 1. 부서별 평가 초안 회람 2. 부서 의견 반영 최종본 확정
최종보고서 작성 1. 재정사업 운영 특성 분석 2. 운용평가 결과 분석 3. 재정사업 운용 제언	7월 28일 ~ 9월 19일	최종보고서 작성 1. 지방보조금 운영 특성 분석 2. 운용평가 결과 분석 3. 지방보조금 운용 제언

2. 주요재정사업 평가 및 결과

1) 평가기준 설계

○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주요재정사업 평가지표에 대해 인천광역시의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평가 항목의 평가지표와 배점을 재설계하여 평가함.

○ 사업계획 단계의 배점을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사업관리 단계의 배점은 30점에서 35점으로 5점이 인상함. 성과/환류 단계의 배점은 50점에서 35점으로 대폭 인하하여 각 과정이 골고루 평가에 반영되도록 함.

[표 2]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주요재정사업 평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 배점
계획 (30점)	1. 사업계획 적정성 (20)	1-1. 사업의 추진근거가 법령이나 조례 또는 상위계획에 근거한 사업인가?	10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5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 방식이 효율적인가?	5
	2. 계획 목표의 적정성 (10)	2-1. 사업(성과) 계획이 사업 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2-2. 사업(성과) 계획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관리 (35점)	3. 사업관리의 적정성 (35)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20
		3-2. 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성과 /환류 (35점)	4.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 결과 환류 (35)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사업계획서 상의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15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사업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10
		4-3. 평가 결과 및 외부 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10
가점 항목		2024년 사업 추진과정에서 외부평가가 우수사업인 경우	3
		2024년 내부 성과평가 결과가 '매우 우수'인 경우	2
계		100	

2) 평가 대상 사업 현황

□ 평가 대상 2024년 인천시 최종예산의 2.6%

○ 2024년 인천광역시의 최종예산은 15조 6,674억원에 달하는데 주요재정사업 평가대상 사업의 예산액은 3,954억원으로 2.5%에 해당하는 규모임.

[표 3]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예산 규모

(단위: 억원)

	당초예산	최종예산	결산상 예산현액
예산액	150,368	156,674	167,309

□ 주요재정사업 평가 대상은 209개 사업

○ 2024 회계연도에 인천시가 시행한 사업 가운데 주요재정사업 평가 대상은 모두 209개 사업인데 투자사업이 103개, 행사성 사업이 106개임.

[표 4] 주요재정사업 평가 대상

(단위: 백만원)

실국명	계		투자사업		행사성사업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계	209	395,381	103	381,648	106	13,733

□ 면담대상 사업

○ 면담 대상은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제출 자료가 부실하거나, 1차 평가에서 낮은 점수가 부여된 사업을 대상으로 담당자 면담을 진행함. 실·국별 미흡 이하 비율의 2배수 이상을 선정해 실시하였음.

○ 면담 대상 사업은 평가 대상사업 209개 가운데 56개 사업으로 26.8%의 사업에서 면담이 이루어짐. 투자사업에서는 31개(30.1%), 행사성 사업에서 25개(23.6%)를 선정함.

3) 성과평가 결과

□ 5개 등급 평가 결과

○ 재정사업 평가 결과는 매우우수가 14건으로 6.7%, 우수 27건으로 12.9%를 차지. 보통은 135건에 64.6%를 차지했으며, 미흡은 30건으로 14.4%, 매우미흡은 3건에 1.4%로 미흡 이하 등급이 33건에 15.8%를 차지함.

○ 매우우수 및 우수 등급의 비율 19.6%는 평가기준(20% 이내)을 충족했으며, 미흡과 매우미흡 등급은 15.8%로 평가기준(10% 이상)을 충족했음.

[표 5] 2024회계연도 실국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사업수	평가 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 이내		70%	10% 이상	
209	14	27	135	30	3
100%	6.7%	12.9%		14.4%	1.4%
	19.6%		64.6%	15.8%	

□ 행사성 사업이 투자사업보다 미흡 이하 적어

○ 투자사업의 우수 등급 이상의 비율은 23.3%인데 반해 행사성사업의 우수 등급 이상 비율은 16.0%로 투자사업의 우수 등급 이상의 비율이 7.3%p 높음.

○ 하지만 미흡 이하 등급의 비율은 투자사업이 19.4%로 행사성 사업의 12.2%보다 7.2%p 높은 것으로 나타남. 보통 등급은 투자사업이 57.3%에 그쳤는데, 행사성 사업은 71.7%로 14.4%p 정도 행사성 사업이 높음.

[표 6] 주요재정사업 중 투자사업 평가 결과

구분	합계	평가 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 이내		70%	10% 이상	
투자사업	103	11	13	59	18	2
		24			20	
(비율)	100%	10.7%	12.6%	57.3%	17.5%	1.9%
		23.3%			19.4%	
행사성사업	106	3	14	76	12	1
		17			13	
(비율)	100.0%	2.8%	13.2%	71.7%	11.3%	0.9%
		16.0%			12.2%	

3. 지방보조사업 평가 및 결과

1) 평가기준 설계

□ 성과평가 지표 설계

○ 지방보조사업은 통계목별로 사업 특성이 구분되어 이를 반영해 평가함. 사업 관리 측면에서 경상사업보조・자본보조, 행사사업보조, 법정운영비보조・사회복지사업보조 등 유사 사업 유형에 따가 평가 항목을 구분하여 배치함.

○ 사업계획에서는 평가항목을 공유하되, 통계목별로 배점을 별도로 구분함. 이에 따라 1-1 문항과 1-4 문항은 유사 통계목별로 배점 기준을 별도로 적용함.

[표 7] 인천광역시 성과평가 지표

분야	평가 항목	배점 100
사업 계획 (20)	1-1. 보조사업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는가? <법정운영비>, <민간경상·민간행사·사회복지사업보조·자본보조> 배점 구분	4
	1-2.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4
	1-3.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6
	1-4. 보조사업의 예산편성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가? <법정운영비>, <민간경상·민간행사·사회복지사업보조·자본보조> 배점 구분	6
사업 관리 (40)	2-1. 사업을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0
	2-2. 사업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7
	2-3.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은 완결성이 있는가?	10
	<경상사업보조·자본보조>	
	2-4.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집행이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6
	2-5.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집행하였는가?	7
	<행사사업보조>	
	2-4. 행사 참석 대상이 일반 시민인가?	6
	2-5. 해당 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이 없었는가?	7
	<법정운영비보조·사회복지사업보조>	
	2-4. 인건비 지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법정운영비를 집행하는가?	6
	2-5.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법정운영비를 집행하였는가?	7
사업 성과 (40)	3-1. 계획한 사업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15
	3-2. 최종 수혜자가 만족하였는가?	10
	3-3.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15
감점	완료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는가?	-5

□ 유지필요성 평가 지표 설계

○ 유지필요성 평가는 3년 단위로 평가하는 중장기 평가임. 행정 환경과 주민의 행정서비스 수요도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비추어 해당 사업의 유지필요성을 점검하도록 지표를 설계함.

○ 2023회계연도 평가부터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유지필요성 평가를 구분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유지필요성 평가를 별도로 수행함. 단년도 평가와 구분하고 평가 이전 2년 간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3년 간 운영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문항 3-1 항목을 신설하여 적용함.

○ 이밖에 성과평가 지표와 마찬가지로 통계목별 사업 운영 특성 등을 반영하여 평가 배점을 구분하여 적용함.

[표 8] 인천광역시 유지평가 지표

분야	평가 항목	배점 100
사업 계획 (25)	1-1.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법정운영비>, <민간경상·민간행사·사회복지사업보조·자본보조> 배점 구분	4
	1-2. 최근 3년 간 사회변화를 반영하였는가?	5
	1-3.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6
	1-4. 보조사업의 예산편성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가? <법정운영비>, <민간경상·민간행사·사회복지사업보조·자본보조> 배점 구분	6
	1-5. 보조사업의 수혜범위가 적정한가?	4
사업 관리 (25)	2-1. 사업 내용을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5
	2-2. 사업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5
	2-3.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은 완결성이 있는가?	10
	2-4. 적절한 부정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2
	2-5. 보조금 규모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3
사업 성과 (50)	3-1. 최근 2년 평가 점수 종합(최근 2년 평가 점수합*0.2)	2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15
	3-3.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15
감점	완료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는가?	-5

2) 평가 대상 사업 현황

□ 총 328건, 성과평가 305건, 유지필요성평가 23건

○ 2024 회계연도에 수행한 지방보조사업은 총 328건임. 이 중 성과평가 대상은 305건을 최종 성과평가 대상으로 선정함. 통계목별로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215건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사업보조 31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8건, 민간행사업보조 14건, 민간자본보조 14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건 순임.

○ 유지필요성 평가는 총 23건임. 통계목별로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가 3년차가 되는 사업이 가장 많아 각 10건을 차지함. 이어 민간자본보조 2건, 사회복지사업보조 1건 순임.

[표 9] 2024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대상 사업: 통계목별

(단위: 건)

구분	대상 사업수
합계	328
성과평가	305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215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3)	28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14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보조 (307-10)	3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31
민간자본보조 (402-01)	14
유지필요성 평가	23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10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
민간자본보조 (402-01)	2

2) 평가 결과

□ 성과평가 결과

○ 5개 등급으로 평가한 성과평가 결과는 매우우수 31건 10%, 우수 61건 20%, 보통 166건 54%, 미흡 31건 10%, 매우미흡 16건 5% 순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한 상대평가 등급 비율을 대체로 준수함.

[표 10] 2024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통계목별

(단위: 건)

구분	총합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합계	305	31	61	166	31	16
(%)	100%	10%	20%	54%	10%	5%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215	19	44	118	24	11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3)	28	4	6	17		1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14			10	3	1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07-10)	3	1	1	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31	5	6	12	4	3
민간자본보조 (402-01)	14	2	4	8		

□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 5개 등급으로 평가한 유지필요성평가 결과를 보면 매우우수 2건 9%, 우수 5건 22%, 보통 11건 48%, 미흡 3건 13%, 매우미흡 2건 9% 순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한 상대평가 등급 비율을 대체로 준수함.

[표 11] 2024년 지방보조사업 유지필요성평가 결과: 통계목별

(단위: 건)

구분	총합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합계	23	2	5	11	3	2
(%)	100%	9%	22%	48%	13%	9%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10	1	3	3	1	2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10		2	6	2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	1				
민간자본보조 (402-01)	2			2		

4. 개선방안

1) 재정사업 개선방안

□ 사업계획 단계 : 유사중복사업 정비 필요

○ 주요재정사업 평가 대상 사업 가운데 일부 유사중복성이 확인된 사업은 3개 유형 10개 사업임.

○ 미래산업국의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전환-직접)(전환사업)’ 사업과 ‘수출 인프라확충 및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은 공통적으로 관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에 사업의 방향이 맞추어져 있음.

○ 글로벌 도시국의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의 내용 중 내역사업인 ‘지역상권 상생 및 인천관광 활성화’ 사업의 ‘인천e지’ 앱 파트너스(가맹점) 및 서비스 영역 확대와 국제협력국의 ‘관광 정보제공 및 인지도 확산 사업’의 내역사업인 ‘스마트관광 플랫폼 인천e지’ 앱 운영 활성화’는 유사한 내용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교통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개선(전환사업)’, ‘보호구역 개선사업(전환-직접, 2단계)’,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이양 2-2단계)’, ‘교통신호시설 확충(스마트 횡단보도 설치공사)’ 사업은 사업의 내용이나 목적이 교통약자를 위한 유사한 사업들임.

- 전환사업의 경우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사업으로 분리해 추진하기보다,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해 운영하면서 중복되는 예산의 문제는 전환사업 종료 시점에 통폐합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관리 단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집행률 개선 필요

○ 주요재정사업 평가에서 투자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는데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집행률이 관리가 되어야 함.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의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사업들의 경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4년 주요재정사업 평가 대상 사업수는 28개로 예산액은 91,281백만원인데 집행액은 23,085백만원에 그쳐 집행률은 매우 낮은 25.3%에 그쳤음.

□ 평가 및 환류 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 주요재정사업 평가 결과에서 확인이 되었듯이 성과/환류 단계의 평가 점수가 다른 단계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음. 평가 체계 구축과 평가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는 사업의 내용을 강화하고 완성도를 높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사업계획 단계에서 평가계획까지 수립하도록 해서 사업의 내용과 목적, 성과가 일관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함

○ 환류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결과 및 지적 사항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및 차기연도 사업계획시 이를 반영한 사업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는지 점검이 필요.

○ 사업 성과 목표 미달의 경우 객관적인 성과 목표 설정이 가능하도록 사업부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2) 지방보조사업 개선방안

□ 계획 및 편성 1: 행사 사업 통계목 운영 관리 강화

○ 인천광역시는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 해당 사업 비중이 굉장히 높음. 이는 사실상 행사 성격 사업을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으로 편성하여 지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예를 들면 보조사업명에 ‘행사’ 등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으로 분류하고 있음. 구체적인 사업 성격을 재분류하여 통계목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를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규정함.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규정함.

○ 체육진흥과는 각종 체육 행사와 대회 등을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41개 사업 전체를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으로 운영함. 하지만 실제 사업 운영에 따라 통계목을 구분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2024.11.01)을 발표하며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의 페널티를 폐지하고 인센티브만 적용함.

○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인구 확충 등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도에서 페널티 규모가 큰 인천광역시는 적극적인 행사 사업 편성을 통해 페널티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 계획 및 편성 2: 지방보조사업 자부담 편성 강화 필요

○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사업자 성격,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지방보조금을 선정하도록 함(제6조). 민간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자부담)은 필수사항은 아니나 사업 성격과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자부담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자부담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사회복지사업보조 및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등 일부 통계목을 제외하고 자부담 의무 부담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집행 및 관리 1: 현금성 지출 관리 필요

○ 일부 지방보조사업에서 시상금·장학금·기념품 등과 같은 현금성 지출을 사업의 주요 항목으로 편성하거나 일부 사업 내용에 포함해 집행하는 것으로 드러남.

○ 지방보조사업과 유사하여 세부 운영 규정을 참고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은 기부금·시상금·상품권 등 격려금 형태의 현금성 비용을 보조금으로 편성하거나 지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 지방재원을 활용한 보조금 지출 시 허용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 자부담 항목으로 책정·집행할 수 있을 것임.

○ 인천광역시는 이를 고려하여 자체적인 현금성 지출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현금성 지출 경비로 '기부금, 시상금, 격려금, 상품권,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장학금, 기념품' 등을 설정하고 해당 항목을 자부담으로 편성하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사업 집행 및 관리 2: 공통 지출 항목 단가 준수 필요

○ 지방보조사업 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영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계약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은 식비 및 간식비 지출 역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2024회계연도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9,000원 이내임.

○ 하지만 인천광역시 일부 지방보조사업에서는 1인당 5만원, 3만3천원 등 식비를 편성하여 지출하는 등 집행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사례 다수 발생. 급식비와 간식비, 피복비 모두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별도로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다만 보훈 단체 혹은 노인 단체 행사 등 예우 등을 위해 필요한 특수한 경우 별도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집행 및 관리 3: 지방보조금 예비비 편성 부적절

○ 지방보조사업은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은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각 부서 사업계획서 의 작성요령(예시)로 고지되고 있으나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이 지방보조사업 교부신청서나 정산 및 실적보고서에 등장함.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의 사업예산 내역을 검토하여 지출 내역을 엄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성과 및 정산: 지방보조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 필요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사업은 사업 계획과 성과 차이가 큰 사업이 다수 포착됨. 사업 계획상 참여인원 목표는 300명이었으나 실제 참여자는 155명으로 절반 가량임에도 지방보조금은 전액 지출하는 등 사업 계획 미흡이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음.

○ 또한 불특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보조사업자와 최종수혜자가 다른 경우 등에도 사업 성과를 위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함. 이를 위해 참여자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지방보조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적용 대상은 ‘민간행사보조사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중 일부가 적정할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는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 수혜자가 동일하지 않은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우선 적용함.